



# 01

SPECIAL  
THEME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과 인명안전대책

글 김인태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조사센터장, 공학박사

## 1. 머리말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말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다중밀집시설’이란 용어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밀집해 있는 시설 또는 공간을 지칭하고 있어 일반적인 용어로 해석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물 단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언급토록 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중 소규모 업체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영업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업소 관계자가 안전에 대해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여 비교적 작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제정되어 이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안전시설이 보완되어 효과를 보았으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사격장 등은 사각지대로 있다가 사고 후에야 관리대상이 되고 있어 법적 규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고들을 보면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역할, 이행 시스템의 확립, 효율적 운영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므로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의 고취와 개인의 생각이 우리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비로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가시화 되리라 생각한다.

## 2.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새로운 업소가 생겨남에 따라 그 대상이 변하고 있는데 2009년 11월 14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격장과 안마시술소 및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이 최근 추가되었다.

현재, 지하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영업장에만 설치하였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공간의 밀폐도를 고려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토록 하였다.

2010년 11월 12일 개정령 시행 이후, 새롭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영업을 하고자 하는 3개 업종의 영업주는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같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개시 전에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분기별 1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안전대책이 강화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산후조리시설**

**3.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노래연습장업**



### 7.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안마시술소

### 8. 화재위험 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일부 예외 규정은 지면상 생략

## 3. 다중이용업소의 특징

대형 참사의 사고원인과 피해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안전수칙 불이행, 피난시설을 포함한 건물 구조의 부적합, 가연물의 취급 부주의, 에너지원의 취급 부주의 및 통제 미흡, 소방시설의 관리 소홀과 같은 유사한 문제점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소 특성상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고, 그 대상이 나 자신 혹은 주변의 누구라도 될 수 있어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용인원 밀집도

실내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한 위험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

#### 나. 무창층

영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로부터 고립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

#### 다. 신규업종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즉, 새로운 물질이나 기술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위험정보가 적어 적절한 예방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규 업종에 대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행하기 어렵다.

#### 라. 소규모 업체

대다수 다중이용업소가 복합건물의 일정부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영업장

만 해도 17만 개소에 이르고 있다.

#### 마. 다양한 업종

다중이용업소라 해도 각 업종마다 특성이 달라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가 곤란하다.

#### 바. 안전의식

다중이용업소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오락과 휴식을 위해 찾고 있어 위험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며, 건물에 대한 위험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화재 시 대처능력이 떨어져 피해가 증가 되는 경향이 있다. 업소 주인, 종업원 등 관계인이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훼손되기도 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 4. 안전 대책

가. 실내장식물을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 되, 가능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확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수리를 하면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최근 영화관에서는 화재와 같이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관람객에게 피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으며, 이용객들에게 위험을 인지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출입자에게 피난안내도를 주거나 피난방법을 알려주는 등 기본적인 화재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해당 업소의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나 다중이용업소가 복합건물 안에 있는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연계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마.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와 비상탈출구가 막힌 경우 인명피해가 많았던 사례를 보면 출입구 근처의 가연물과 점화원의 통제와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 및 비상탈출구의 철저한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니 만큼 그 대상에 대해 안전교육과 홍보를 하여 안전

01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된다.

**사.**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은 화재 진압에 대한 장애요소가 있으므로 화재의 가능성과 피해규모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맺음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원인은 실화, 방화, 전기 등 일반 영업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으나 소규모의 화재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예방과 피해감소, 시설요인과 인적요인, 법적 규제와 실질적 위협에 기반한 규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영업주와 종사원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은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나 그 효과가 늦어 중요성만 강조되고 제대로 실천되지 않거나, 구색을 맞추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을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 기구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조치를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만들게 됨에 따라 시간에 제약을 받게 되어 단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전에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적의 규정을 만들어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합당한 안전수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보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고 형태였기에 이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더 이상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게 된다. ☹